

함께 만드는 완전히 새로운 경남

- 2020년 거제, 거창, 김해 -
이행실태감사 결과 공개문



경 상 남 도
(감사위원회)

〈 목 차 〉

1.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준공 관리 처분 요구사항 조치 소홀	5
2. 000 조성사업 처분 요구사항 조치 소홀	8
3. 폐업 미신고 농가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 부적정	11
4. 담배사업법 위반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14

【일련번호 : 1】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준공 관리 처분 요구사항 조치 소홀

소 관 기 관 00시(00과)

조 치 기 관 00시(00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시는 2000. 0. 00.~00. 0. 기간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감사결과 00시 00과는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준공 관리 업무 소홀’에 대하여 도로점용(굴착)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준공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000건에 대하여는 조속히 준공절차를 이행하고,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해당 공사가 완료되었는데도 준공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허가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 요구를 받았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시는 「도로법」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라 OO시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총 000건에 대하여 준공 확인(검사)절차를 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준공 확인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허가자에 대하여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OO시 OO과에서는 2000. 00. 00. 경남도로부터 ‘이행실태 감사계획 통보’를 받고서야 2000. 00. 00. 도로점용(굴착) 준공 확인을 받지 않은 피허가자에게 ‘도로점용(굴착)허가 및 준공 확인 신청 요청’을 하였고, 다시 준공 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피허가자에게 2000. 00. 00. ‘도로점용(굴착) 준공 확인 신청 요청’ 독촉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감사 처분 당시 도로점용(굴착) 준공 확인 신청을 하지 않은 000건 중 000건은 도로점용(굴착) 준공 확인 신청을 하여 00건이 준공(검사) 처리되었고, 000건은 준공 확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000건은 이행실태 감사일 현재까지도 도로점용(굴착) 준공 확인 신청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공사를 마친 후 도로관리청에게 준공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17조(과태료)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요청’을 하여야 함에도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획조차도 수립하지 않는 등 감사 처분에 대한 사후 조치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의견

00시 00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실무 담당자의 업무미숙 및 실무책임자 관리감독 소홀로 발생하였으며, 2000년 00월부터 도로점용(굴착) 미준공 건에 대해 준공신청을 요청 및 독촉하고 있고, 2000년 0월 중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으로 앞으로 업무처리가 누락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김해시장은

① 감사처분요구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준공 확인 및 도로관리청에게 준공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 미숙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00과 00급 000, 00과(현 000과) 00급 000에게는 엄중 주의 촉구하여 앞으로 감사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성실히 이행 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고 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00과 00급 000**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도로법」, 「농어촌도로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굴착) 준공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000건에 대하여 조속히 준공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라며, 준공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피 허가자 등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도로점용(굴착) 허가 및 준공 관리업무를 추진하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시정 요구

제 목 000 조성사업 처분 요구사항 조치 소홀

소 관 기 관 00시(00과)

조 치 기 관 00시(00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00시는 2000. 0. 00.~00. 0. 기간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감사결과 00시 00과는 ‘000 조성사업 추진 부적정’에 대하여 000 내 보도교 설치 구간 강관비계다리 미설치에 따른 000천 원 상당액의 감액요인에 대한 ‘회수’ 조치와 ‘000 조성사업’ 준공검사 이후 비관리청 공사 준공인가 미이행 등 행정절차 이행 조치에 대한 감사 처분 요구를 받았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OO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검사와 대가지급), 「하천법」 제30조(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따라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 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할 때에는 필요한 시정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어 강관비계다리 미설치로 준공 처리한 000천 원 상당액은 ‘회수’ 조치 하여야 하고, 2000. 0. 00. ‘000 조성사업’ 공사 준공에 따라 하천 관리청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OO시 OO과에서는 2000. 00. 00. 경남도로부터 ‘이행실태 감사계획 통보’를 받고서야 2000. 00. 00. ‘공사 미시공분 등에 대한 회수 조치 통보’ 공문을 도급업체에게 발송하면서 2000. 0. 00.까지 납부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0000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준공인가 신청 시에는 공사비 정산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반드시 하천관리청 준공인가 신청 전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함에도 담당자는 지방하천사업이 2020년 지방이양사업으로 000에서 0000로 변경되어 공사비 정산을 못했다고 하고 있으나

2000년 공사 준공은 「지방하천정비사업 집행지침」(국토교통부) 제34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에 따라 0000에 정산하도록 되어 있었고, 종합감사 이후 2000년에 국토교통부에 정산보고를 하지 못해 준공인가를 득하지 못하였다면 2000년 지방하천사업 지방 이양에 따라 2000년에는 000에 정산 요청을 하고 준공인가를 득하여야 함에도 이행실태 감사일 현재까지도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등 감사 처분에 대한 사후 조치를 소홀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

또한 2000. 0. 00. 0000시에도 ‘하천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미이행’으로 지적 되었으며, 이에 000는 2000. 00. 0. ‘2000년도 0000감사 결과 처분 요구에 따른 조치 요청’ 공문을 발송하면서 미정산된 사업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00시 00과에 공문을 시달한 사실도 있다.

관계기관 의견

00시 00과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각종 타사업 업무 추진 등으로 인하여 감사처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고, 공사 미시공분 금액 회수는 2000. 0. 00.까지 회수하고자 도급업체에게 회수 조치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0000 조성사업 완료에 따라 보조금 사용잔액 정산 및 이자 반납 등 현재 00000과와 공사비 정산 및 준공인가에 대하여 협의 중에 있으므로 빠른 시일내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조치할 사항 김해시장은

① 감사처분요구에 따라 ‘0000 조성사업’ 공사 미시공분 회수조치와 비관리청 공사 준공인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실무담당자 00과 00급 000와 업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책무가 있음에도 소홀히 한 실무책임자 00과 00급 000에 대하여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훈계)

②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하천법」에 따라 ‘000 조성사업’ 공사 미시공분 000천 원 상당액은 ‘회수’ 조치하시기 바라며, 비관리청 공사 준공인가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일련번호 : 3】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폐업 미신고 농가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등 부적정

소 관 기 관 김해시(○○○과)

조 치 기 관 김해시(○○○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김해시는 2019. 9. 23. ~ 10. 4.(10일간) ‘2019년 김해시 종합감사’(경상남도 시행)를 수감하였고, 감사결과 김해시 ○○○과는 「축산업 허가제 관련 일체점검 미이행 및 행정처분 소홀」 건과 관련하여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실무담당자와 실무책임자에 대한 훈계 처분과 축산업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73개 농가(14,600천원)와 허가·등록 변경사항(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95개 농가(9,500천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처분요구 받았다.

2. 관계법령(판단근거)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에서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도지사는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조치결과를 통보 받은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에서도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김해시는 감사결과의 처분요구에 따라 축산업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와 허가·등록 변경사항(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농가에 대해 「축산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감사결과에 대한 이행실태를 확인한 결과 김해시 ○○○과에서는 허가·등록 변경 사항(폐업)을 신고하지 아니한 95개 농가에 대해 처분요구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제출 기간을 부여하여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 납부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감경하고 의견제출이 없을 시에는 「축산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여야 함에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제척기간(5년)이 경과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사안인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검토과정 조차 없이 95건 전체에 대해 같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절차를 전혀 이행하지 않았고,

해당 농가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¹⁾하여 농가로부터 폐업신고를 받거나 직권으로 말소하여 일부는 폐업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농가는 감사일 현재 여전히 폐업이 진행 중에 있는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다.

1) 「가축사육업 폐업 신고서 제출 요청」 ○○○과-○○○○○(2019.○○.○.)

관계기관 의견

김해시 ○○○과에서는 95개 농가 중 사육 중인 것으로 확인된 보수교육 미이수 농가 등 14건을 제외한 나머지 81건의 경우 폐업 등 처리 하였으며, 사실상 폐업한 농가에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농가의 반발 및 민원발생 우려 등으로 인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신규임용 직후 업무 처리를 이행하다 보니 정확한 절차와 관련 법률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하였으며 추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고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앞으로는 매년 실시하는 축산업 정기점검을 통해 축산법 위반사항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치할 사항 김해시장은

- ①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요구에도 불구하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축산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를 하지 않는 등 업무상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실무 책임자 ○○○과 지방○○주사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 「축산법」에 따른 과태료를 미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 처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의**)

【일련번호 : 4】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훈계·주의 요구

제 목 담배사업법 위반 담배소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부적정

소 관 기 관 거제시(○○○○○○과)

조 치 기 관 거제시(○○○○○○과)

내 용

1. 현황(업무개요)

거제시는 2019. 4. 22. ~ 5. 3. 기간 도 종합감사를 수감하였고, 감사결과 거제시 ○○○○과에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였음에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소매인(18명)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라는 처분 요구를 받았다.

이에 거제시 ○○○○과에서는 행정처분이 불가한 10명(폐업 5명, 무혐의 4명, 재판중 1명)을 제외한 8명에 대하여 내부적으로 검토하여 7명에 대하여 경고 처분하고, 나머지 1명에 대하여는 영업정지(1월) 처분하였다.

2. 관계법령(판단기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8조 규정에 따르면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 등의 사유로 그 조치에 장기간이 필요한 사항인 때에는 앞으로 조치할 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이행결과 통보를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지사는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에 대한 이행결과를 통보받거나 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감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이행결과 또는 조치결과의 적정성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 제27조(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감사결과에 따른 처분 등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따라 조치하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거제시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하여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처분 하여야 하고, 위반행위의 동기·내용·기간·횟수 및 위반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감경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한 후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3.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담배사업법」 제17조에는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영업정지처분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796호) 제11조제3항 [별표3] 2.개별기준 사.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위반차수(1차, 2차)에 따라 각각 2개월, 3개월 영업정지처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제시 ○○○○과에서는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영업정지처분

대상자 8명 중 7명에 대하여 ‘영업정지처분’이 아닌 ‘경고처분’을 한 사실이 있다.

관계기관 등 의견 및 검토결과

거제시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청소년 담배 판매에 대한 소매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다른 소매점과의 이해관계, 형평성 문제 등에 있어 공정성 있게 처리해야 할 업무이므로, 이후 발생하는 처분 건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임의적인 판단없이 기획재정부 및 법제처, 담배 고충처리센터의 유권해석을 더 많이 참고하여 업무에 반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9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서 「담배사업법」 제17조제2항에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임의규정으로 판단한 것은 타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음에도 또다시 동일하게 임의규정으로 판단하여 행정처분 기준에도 없는 ‘경고처분’을 한 것은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된다.

다만, 종합감사에서 지적받은 담당자가 아닌 후임 담당자가 새롭게 업무를 처리하면서, 위반 행위 발생일이 1년 ~ 3년6개월 이상 경과되어 소매인들이 행정청의 처분을 예상하기 어려운 점, 당시 거제의 경기가 조선불황으로 인해 매우 어려워 매출 하락으로 담배소매인의 생계유지가 힘들었다는 점 등 영업정지처분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정은 참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면서,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 범위 벗어나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현, ○○면) 지방○○주사 ○○○, 실무담당자 ○○○○과 지방○○서기○○○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치할 사항 거제시장은

- ①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소매인에 대하여 행정처분 하면서,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기준 범위 벗어나 자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실무책임자 ○○○○과(현, ○○면) 지방○○주사 ○○○, 실무담당자 ○○○○과 지방○○서기 ○○○을 「경상남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훈계**” 처분하시기 바랍니다.(**훈계**)
- ② 앞으로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에 대한 직무교육을 강화하는 등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